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01286(본소), 2017다20129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01286(본소), 2017다201293(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나2010108(본소), 2016나2010115(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가합2192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A종교단체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남성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박정수, 황희동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종교단체 C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기영, 이유경

판결 선고2019. 8. 14.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나2010108(본소), 2016나2010115(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본소 청구 중 신축본당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선행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시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및 피고는 선행소송 제기일인 2011. 9. 1.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유체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20억 원 및 인테리어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 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20억 원 및 인테리어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 및 부당이득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원심에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소속 교인들의 공동의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고 피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내지 책임제한비율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측의 사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피고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명시적으로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지는 않았으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마. 제1심 감정인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심 감정인의 임료감정촉탁결과는 기대이율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위 임료감정촉탁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이유를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바.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 매매로 인한 20억 5,0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유체동산의 사용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그 사용이익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상계항변을 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자동채권으로 ① 부속건물 정산금 27억 2,000만 원, ②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자 총액 3,454,452,659원 등 합계액 6,174,452,659원을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사.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그리고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권원 없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피고는 원고에게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시점인 2011. 9.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6. 10. 4.까지 임료 상당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합계액 상당의 채권은 원심 변론종결일로서 상계적상일인 2016. 10. 4.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등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시점인 2011. 9.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6. 10. 4.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을 산정한 다음, 그 이득액 상당의 채권은 2016. 10. 4.자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고가 받은 이익은

전부가 위 상계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I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원고가 선행소송을 제기한 2011. 9. 1.경부터 원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